

#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6
----------	----

제안연월일 : 2022년 8월 29일
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## 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조직개편(‘22.8.19.자) 취지를 반영하고, 상임위원회 간 직무정체성과 의정활동 범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일부 소관부서를 조정하는 한편, 이에 맞춰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주택균형개발위원회를 주택공간위원회로, 도시계획공간위원회를 도시계획균형위원회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, 미래공간기획관을 주택공간위원회로, 균형발전본부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으로 각각 조정함(안 제32조제8호 및 제9호, 제33조제1항제8호 및 제9호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등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##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8. 주택공간위원회

9. 도시계획균형위원회

제33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주택균형개발위원회”를 “주택공간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균형발전본부”를 “미래공간기획관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도시계획공간위원회”를 “도시계획균형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미래공간기획관”을 “균형발전본부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2조(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)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으며, 그 위원정수는 13명 이내로 한다. 다만, 원구성시 최소 위원정수는 9명 이상으로 한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8. <u>주택균형개발위원회</u></p> <p>9. <u>도시계획공간위원회</u></p> <p>10. · 11. (생략)</p>	<p>제32조(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) - ----- ----- --. 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<u>주택공간위원회</u></p> <p>9. <u>도시계획균형위원회</u></p> <p>10. · 11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3조(상임위원회의 소관) ①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8. <u>주택균형개발위원회</u>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<u>균형발전본부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다. ~ 마. (생략)</p> <p>9. <u>도시계획공간위원회</u>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<u>미래공간기획관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다. ~ 바. (생략)</p>	<p>제33조(상임위원회의 소관) ① -- ----- 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<u>주택공간위원회</u>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<u>미래공간기획관</u> ----- -----</p> <p>다. ~ 마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<u>도시계획균형위원회</u>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<u>균형발전본부</u> ----- -----</p> <p>다. ~ 바. (현행과 같음)</p>

10. · 11. (생 략)

② (생 략)

10. · 11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